

서울고등법원 2017. 2. 3 선고 2016나2062734 판결 [계약금반환 등 청구의 소]

재판경과

서울고등법원 2017. 2. 3 선고 2016나2062734 판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 8. 26 선고 2016가단42249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A

피고, 피항소인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6. 12. 16.

판결 선고 2017. 2. 3.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 8. 26. 선고 2016가단42249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구 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7,412,972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28.부터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항 소 취 지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8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28.부터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심판범위

제1심은 원고의 ① 계약금 84,000,000원 반환청구와 ② 임금 23,412,972원 청구 모두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원고가 그 중 계약금 84,000,000원 반환청구 부분에 대해서만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은 계약금 84,000,000원 반환청구 부분에 대해서만 심판한다.

2.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원고의 계약금 84,000,000원 반환청구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1. 기초사실」, 「2. 판단 가. 계약금 반환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1심 판결 2쪽 6행 "가."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는 평택시 C에 있는 F빌딩 4, 5층에서 「E」 어학원을 운영하고 위 건물 3층에서 「D」 키즈카페를 운영할 목적으로 2015. 9. 17. 설립된 법인인데, 원고는 피고 설립 당시 피고 발행의 액면금 500원 보통주식 400,000주 중 40,000주를 취득하고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

나. 제1심 판결 2쪽 20행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계약금 84,0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를 "이 사건 계약 제3조 제4항에 따라 피고 발행의 주식 40,000주 인수대금 등으로 지급한 84,000,000원을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계약금 지급으로 갈음하였는데"로 고친다.

다. 제1심 판결 3쪽 1 내지 3행을 『다. 원고는 2016. 1. 27. 피고의 사내이사에서 사임하였다.』로 고친다.

라. 제1심 판결 3쪽 16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금 84,000,000원이 이 사건 계약의 양도대금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을 고려할 때 손해배상의 예정액으로 부당히 과다하므로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기존에 신주인수대금 등으로 납부한 84,000,000원을 계약금으로 갈음한 것으로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계약금 84,000,000원을 실제로 지급하지는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 주장의 사정만으로 위 84,000,000원이 손해배상의 예정액으로 부당히 과다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계약금 84,000,000원 반환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김인겸

판사하상혁

판사신종오